

15. 보증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

자료제공 :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분양등의 사유로 부지대금상환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조합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지대금상환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금 납부마감일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1차 중도금 납부일의 익일에 각각 분양대금 수납금액중 50%가 상환되도록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2차 중도금 납부일 익일에 부지대금이 전액 상환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
|---|-----------------------|
| 제51조의2 주택분양보증과 부지대금상환 ① 주택건설부지매입자금대출보증을 해제하기 전에 당해 부지에 주택분양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 명의 또는 조합원과의 공동명의로 분양대금수납계좌를 개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 제51조의2 주택분양보증과 부지대금상환 |

| 현행 | 개정 |
|---|--|
| <p>1. 계약금 납부마감일 익일에 당해 대출금의 40퍼센트가 상환되도록 조치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중도금 납부일 익일에 각각 당해 대출금의 30퍼센트가 상환되도록 조치한다.</p> <p>②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을 해제하기 전에 당해 부지에 주택분양보증을 하는 경우 또는 부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당해 부지에 주택분양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단서신설)</p> |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u>다만, 미분양등의 사유로 부지대금상환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조합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지대금상환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u></p> <p><u>1. 계약금 납부마감일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1차 중도금 납부일의 익일에 각각 분양대금 수납금액중 50%가 상환되도록 한다.</u></p> <p><u>2.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한 2차 중도금 납부일 익일에 부지대금이 전액 상환되도록 한다.</u></p> |

주택회보